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단508663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정우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주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4. 12.까지는 연 6%의, 202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전시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0. 12. 23. 원고와 D 화보집 유통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 12. 23. C와 사이에, 주식회사 E가 주최한 'F'의 D 화보집(이하 '이 사건 화보집'이라 한다)을 권당 35,000원씩 50,000권을 총 1,750,000,000원에 제공하는 내용의 D 화보집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르면, C가 계약금 100,000,000원을 계약 당일인 2020. 12. 23.에 지급하고, 중도금 825,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보집 샘플 3권을 수령(원고는 샘플을 2021. 1. 18.까지 납품하기로 하였다)한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 825,000,000원은 C가 원고가 납품(원고는 2021. 2. 20.까지 납품하기로 하였다)한 이 사건 화보집에 대한 검수를 마친 뒤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즉시 입금하고,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화보집 50,000권을 C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C와 피고의 요청으로 C로부터 중도금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 4. 20. 5,040권, 2021. 4. 29. 11,520권, 2021. 5. 7. 34,190권을 C의 물류회사인 G에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화보집 유통계약 내용에 따른 50,000권을 상회하는 물량인 50,750권(=5,040권 + 11,520권 + 34,190권)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유통계약상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C는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21. 5. 14.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305,000,000원을 2021. 5.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21. 5. 25. 원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유통계약상의 미지급 잔금인 305,000,000원이 2021. 5. 31.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그 즉시 해당 잔금을 지급하고,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C는 2021. 5. 31.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 C는 2021. 12. 2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C의 이 사건 유통계약상의 미지급 잔금에서 C가 2021. 12. 29.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을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 순서로 충당한 나머지 원금과 이에 대한 2021.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통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보집을 2021. 2. 20.까지 납품하기로 하였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2021. 4. 20.~2021. 5. 7. 사이에 납품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잔금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이행청구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유통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화보집을 당초 2021. 2. 20.까지 납품하기로 한 것은 앞서 1의 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1의 다. 라.에 따르면 그와 더불어 원고는 C로부터 잔금 지급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화보집을 인도하기로 한 사실, 이후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 4. 20.~2021. 5. 7. 이 사건 유통계약에서 정한 화보집 물량을 모두 인도하였고, C는 원고에게 2021. 5. 31.까지 잔금 30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21. 5. 25.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잔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채무자인 C가 2021. 12. 29.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5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일인 2021. 5. 25.부터 실제 변제일인 2021. 12. 29까지 발생한 이자 10,980,000원($= 305,000,000\text{원} \times \text{상법상 이율 } 0.06 \times 219\text{일} \div 365\text{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9,020,000원이 원본 305,000,000원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265,980,000원($= 305,000,000\text{원} - 39,020,000\text{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2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